

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검토보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: 2008. 2. 22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18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사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용자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용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, 수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령을 정비함
- 나.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의 용자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(안 제6조)
- 다.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용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(안 제6조)
- 라.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함

4. 관계법령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9조(기본지원사업) 및 제36조(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)

5. 검토의견

-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고용증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용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용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하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조치로서
-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검토보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: 2008. 2. 22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19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사유

- 사업종류 중 기본지원사업 확대(2개→5개)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령을 정비함
- 나.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지원사업의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)
- 다. 관련법에 따라 세출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한다(안 제3조)

4. 관계법령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」 제10조 (지원사업의 종류 등) 및 제16조의2(지원금의 관리 등)

5. 검토의견

-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 지원사업이 현행 2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시키고
-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·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등을 검토한바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사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: 2008. 2. 22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20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사유
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로 정비함
- 나.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함(안 제1조)
 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⇒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- 다. 위원회의 기능 추가(안 제4조)
 -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
4. 관계법령
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5조(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)

5. 검토의견

-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중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 근거 법령명과 낱말 띄어쓰기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·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